#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3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박 정·어기구·김정호

임오경 · 김병기 · 소병훈

강유정 · 김현정 · 송기헌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 는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출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외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 ②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0조의2"를 "제10조의2, 제11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2조제2항"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10

조, 제11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1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
	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하
	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
	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출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
	외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
	은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
	<u> 여야 한다.</u>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 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 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 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 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 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3 항·제4항, 제30조의4, 제31조제 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 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 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⑥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저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0</u> 조의2, 제11조
③ ~ ⑥ (현행과 같음)
세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 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 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 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 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다.

### ② ~ ④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지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u>M10조, 제12조제2항</u>, 제12조 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 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10조, 제11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u>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u>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 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 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 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 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 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 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3. (생략)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 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 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 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 제11조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	
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